# E-discovery Case Study & email governance

dalma37

dalma37@gmail.com



#### **Contents**



- 1. Introduce Penta Systems
- 2. E-Discovery 소개
- 3. E-discovery 사례
- 4. Email Governance
- 5. From Email Archiving to e-discovery

#### 펜타시스템 소개



- Enterprise Solution Vender(1987~)
  - Adabas D
  - Natural

- Tuxedo
- Powerbuilder

- Weblogic
- Websphere
- Wily
- Tivoli

# MainFrame

# Client-Server

Web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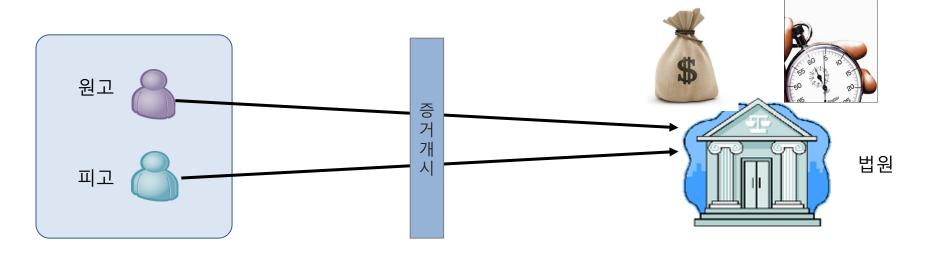
- Documentum/Email Archiving
- Oracle
- IBM
- Penta Security Damo, Wapples, ISSAC
- BI/Big Data
- Red Hat
- Powerbuilder



## E-discovery란?



전자증거개시제도(e-Discovery; 디지털증거개시)는 증거개시제도에서 전자문서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ESI가 포함되어 발전된 개념(2006년)



- 1938년 연방법원에서 사용되는 민사소송에 관한 규칙으로 고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끝날 때까지 소송을 운영하는 절차를 제시하는 FRCP(Federation Rule of CivilProcedure, 연방민사소송규칙)를 제정하면서 Discovery 제도 규정
- Discovery 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 3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변론 전의 절차를 통칭하는 개념
- 쟁점을 명확히 하고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는 소송의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절차
- 과도한 요구는 취소,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강제 명령
- 진술녹취서, 질문서, 문서/물건, 신체/정신 검사, 자백요구
- 증거개시동안 분쟁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는 소송과 관련한 임의의 정보를 요청할 권리

# E-discovery 괴물



- 특허괴물과 유사(Patent troll), 인텔렉추얼벤처스 5조원의 자금 운영
-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에, 소송전에 복잡하고 다양한 증거개시 요구
- 2006년 기준 건당 150만 달러 소요
- 120일 안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자료에서 연관성찾아 추출 어려움
  - → e-discovery 솔루션이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보유한 법률사무소 이용

#### 주요 '특허 괴물' 기업들 현황

이름	활동 분야	내용					
인텔렉추얼 벤처스	컴퓨터 등 IT 전분야 에서 특허 2만 건	인텔·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펀드에 참여. 세계적으로 가 장 많은 특허를 보유					
인터디지털	휴대폰 분야 특허 4200건	1972년 설립 이후. 휴대폰 분야에서만 집중적으로 특허 소송 제기. 노키아·삼성전자·샤프 등에서 로열티 수입.					
NPT	휴대폰 이메일 관련 특허	1992년 설립. 노키아, 림(RIM) 등 휴대폰 제조업체로부 터 로열티 수익.					
포젠트 네트워크	소프트웨어 분야 특허	어도비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에게서 로열티 수입. 델컴 퓨터를 포함한 40여 PC제조업체를 상대로 특허 소송 중.					
아카시아 리서치	바이오칩 등 생명공학 분야 특허	노키아·월트디즈니 등과 라이선스 협약 체결					
시스벨	음원 관리 관련 특허	MP3 등 한국 기업에 대한 특허 공세를 강화하고 있음					

※ 2007년 기준 〈자료: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〉



# 2002년 Laura Zubulake의 UBS Warburg 소송



#### 개정이전의 e-discovery 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연방사건판례로 혁신적인 4가지 판례

- 1.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을 의도적으로 삭제
- 2. 원고의 고소가 합리적으로 예상된 상황에서 ESI에 대한 보존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전자자료를 삭제 및 훼손
- 3. 백업 테이프에서 관련 이메일 복구가 기술적, 비용적으로 충분히 가능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않음
- 이 판결로 FRCP 개정안에 내용
- 1. 문서 재정의: ESI 추가(유형, 무형) 문서의 정의는 미완결로 낳둠
- 2. 강화된 공개 요구사항 : 소송에 앞서 당사자들이 공개하도록 요구
- 3. 이원제 ESI : 일원(쉽게 접근 가능한 ESI), 이원(접근할 수 없는 소스의 ESI)
- 4. 처벌에 대한 제한 : 현저한 부주의,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통해 ESI를 보존하지 못한 당사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
- → e-discovery 제도란 일반적인 증거개시제도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제도가 아니라 ESI를 대상으로 하는 증거개시제도대상도 데스크톱, 랩톱, 스마트폰 모든 형태의 서버

# 하이닉스 램버스 관련 소송 뉴스



http://media.daum.net/economic/industry/newsview?newsid=20110516204103974

### 사례 – Hynix vs 램버스





- •Hynix 와 미국 램버스 사의 특허권 소송
- •2011년 5월에 Hynix 승소
- •이 판결로 <u>Hynix 는 2010년 순수익의 1/5인</u> 4,000억 절약
- •CNBC: "법원에 따르면 램버스 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 관련된 9만~1만8천 파운드에 달하는 자료를 파기했습니다."
- •램버스의 주기적인 자료파기를 불법행위로 간주
- •이로써 11년간의 법적 공방이 끝남.





#### 사례 - 삼성 vs MOSAID



- 2001년 9월 13일 캐나다의 소송 제기
- <u>삼성전자는 심의단계에서 서류 미</u> 제출과 관련된 EMAIL 증거자료 파기
- 2004년 말, New Jersey 법원은 Email
  미제출 등의 이유로 56만 달러 벌금 부과
- 모자이드사의 부사장은 삼성전자가 이번
  소송과 관련한 내부 이메일과 관련
 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
  삼성전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힘



## 사례 – Morgan Stanley vs sunbeam



- 2005년 미국법원은 Morgan Stanley사가 <u>증거(이메일)을 고의로 훼손</u>해서 sunbeam사의 투자자들을 속인 증거로 추정하여 벌금 부과 : <u>15억 달러(1조 7억원)</u>
- SEC 의무 보존기간이 24개월인데 12개월 만에 이메일을 삭제함
- <u>주법원은 모건스탠리에 사기에 대한 혐의 대신 모건스탠리가 10년 가까이 이메일을 포함한 대량 정보를 관리하는데 소홀</u>했다는 점을 지적
- 이제 법원이 요구하는 정보를 단순히 `찾기 어렵다`고 주장하면서 피하는 것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된 것
- 이번 판례는 모건스탠리를 비롯한 월가의 기업들에게 기업 데이터 관리에 투자의 시급성을 일깨우는 계기
- 이메일을 비롯한 기업정보를 체계적이고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기업의 연속성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

# MorganStanley

#### 사례 - 아담스 vs 아수스



- 필립 M.아담스와 아수스=필립 M.아담스(이하 아담스)는 2009년 3월 자사가 보유한 플로피 디스크 결함 발견 소프트웨어 기술을 아수스가 도용건으로 소 송
- 아담스는 아수스가 핵심적인 증거를 파괴했다고 주장
- <u>아수스는 당시 이메일 서버가 아카이빙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으며, 임직원</u> 들은 장기간 보존해야 할 이메일은 PC에 보관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
- 법정은 문서와 이메일을 포함한 데이터를 성실히 제출한 측인 아담스의 손을 들어줬다.



#### 사례 - 퀄컴 vs 브로드콤



- 퀄컴은 브로드컴과의 저작권 소송에서 <u>관련 이메일을 제대로 찾아내지</u> 못하는 바람에 850만달러의 벌금
- 2005년 브로드콤과 퀄컴간 일어난 기술 특허 분쟁에서 퀄컴은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이메일과 전자문서를 제출요구
- 이 E디스커버리 과정이 온전히 수행되지 못해 퀄컴은 패소는 물론 상대 편 변호사 비용 등 850만달러를 지불
- <u>퀄컴의 변호사들은 소송 증거 보존 실패의 책임이 있는데다 소송증거 은</u> <u>닉 행위에 참여했다는 점에 변호사윤리규정 위반으로 징계</u>





#### 사례 - 오라클 vs 오라클 노조



- 오라클은 2008년 노동조합(Nursing Home Pension Fund)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, 2006년말 배포된 래리 엘리슨 CEO 이메일 등을 제출하라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판사의 요구를 받았으나 결국 실패
- 수시로 작업이 주어지거나 초과 근무가 일상화된 IT 기업들은 '초과근무지급예외'라는 규정을 적용했다. 집단소송의 원고들은 오라클이 4만여 임직원 중 단 30명에게만 고지했음을 주장했다.



## 사례 – Samsung vs Apple



- 삼성전자가 애플과 미국 특허침해소송 배심원 평결에서 진 결정적 이유는 구글이 삼성에게 보낸 e메일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(현지시간) 보도
-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 대표인 벨빈 호건(67)은 한 인터뷰에서 "모든 것은 삼성이 실제로 모방했다고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었고, 우리는 가야만 하는 곳이 증 거 속에 있단 것을 알았다"며 2010년 삼성의 내부 e메일을 거론
- 그는 <u>"배심원들은 구글이 삼성에 애플 디자인을 피하라고 말하는 메모를 봤을 때"</u> 그 메모가 증거의 역할을 했다며, "삼성전자 고위급 경영진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실제로 모방하라고 지시했다"고 단언
- 이 e메일은 2010년 2월15일 구글과 회의한 한 <u>삼성전자</u> 선임 디자이너의 논평을 삼성 내부에서 회람하기 위해 발송된 것이다. 그 e메일은 삼성의 태블릿 PC 한 모델을 언급하 면서 "애플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두드러지게 다르게 만들어라" 라고 지시한 내용을 담음
- 또 다른 e메일은 그해 2월22일에 삼성 직원 30여 명에게 보내진 것으로 "(갤럭시)S 시리 즈의 디자인 유사성 문제에 대응할" 필요성을 담고 있다. 그 e메일은 "구글이 아이패드와 구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다. 현재 디자인을 유지하면서, 각 통신사와 구글의 요구를 감안해 디자인 구별 가능성을 검토하라"고 지시

#### 소송 - 코오롱 vs 듀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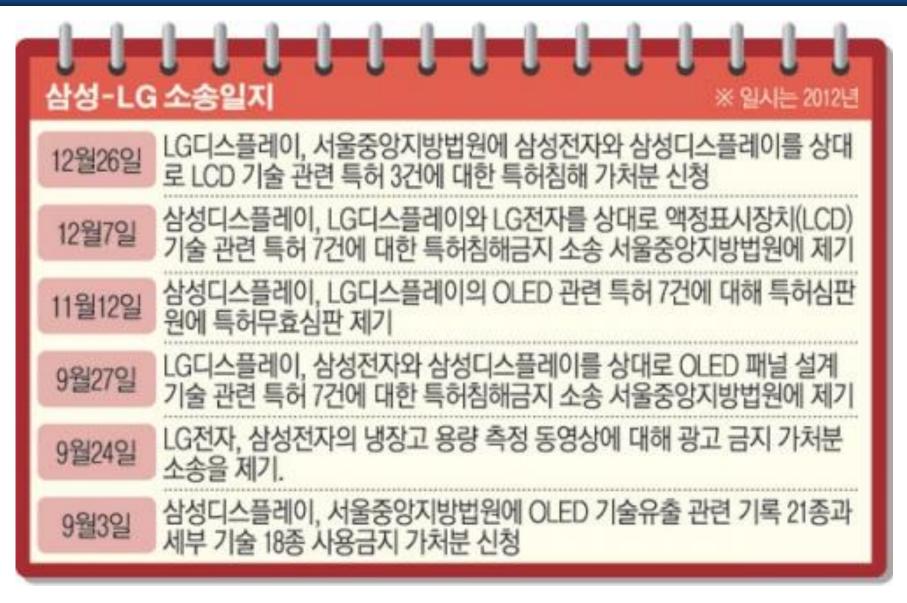


- •미국의 법률 전문매체 로우(LAW)360은 지난해 7월 22일 기사에서 <u>"코오롱의 임직원들이</u> 고의로 사건 관련 이메일들을 삭제했고 그 때문에 코오롱이 제재를 받았다"고 보도
- •코오롱이 법원의 증거보존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자사에 불리한 증거를 파기했다는 것
- •통상 미국 소송 사건에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면 경우에 따라 최고 패소 판결(default judgment)까지 받을 수 있다. 코오롱 측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버를 분석한 결과 코오롱은 총 <u>1만 7811개의 Email을 삭제</u>한 것으로 조사됐다.

	For the	foreg	going	reasons	, Plai	ntiff	DuP	ont's	MOT	ION	FO
SANCT	IONS RE	LATING	[sic]	KOLON'	S SPOL	IATION	OF	EVIDE	NCE	(Do	cket
No. 3	93) wil	l be gr	anted								
	It is s	ORDER	RED.								
						/s/			221	1	
					E. Pay United	ne					

#### LGD vs 삼성디스플레이





#### 이메일 자동 삭제 - 의제자백(擬制自白)



국내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메일을 자사 기준 또는 법적 불리를 판단하여 임의 삭제하거나 보존을 하지 않고 있어, 국제 분쟁에서 패소 사유와 더불어 가중된 처벌을 받고 있음.

- 1. 삼성VS 애플-싱글 메일 자동 삭제 기능 불리하게 적용
- 2. 하이닉스VS 램버스 :램버스 메일 삭제로 하이닉스 승소,
- 3. 코오롱 VS 듀퐁 : 코오롱 메일삭제로 가중 처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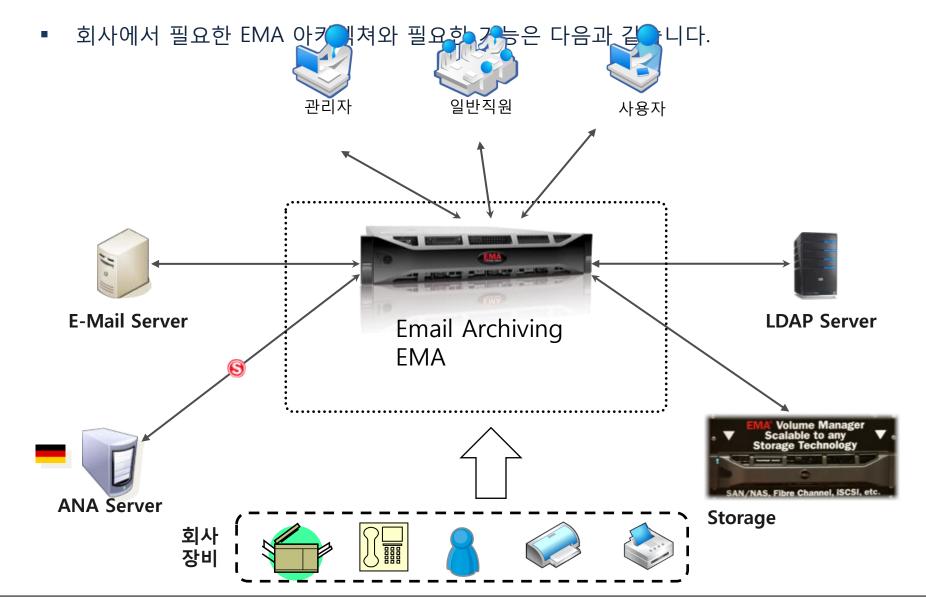
#### <u>메일 삭제 시 법적 불리 적용 기준></u> <mark>의제자백</mark>(불리한 추정, )

의제자백이란 재판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침묵을 유지하는 등의 행동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. 영미법에서는 특히 증거를 파괴했을 경우 해당 증거가 파괴한 사람에게 불리한 것으로 추정한다.(법률용어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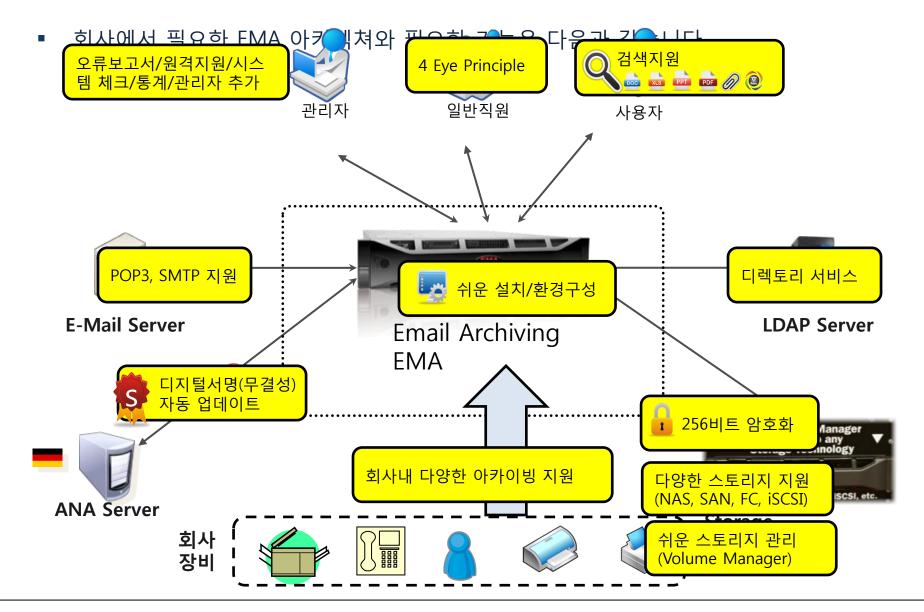
# Email Archiving 아키텍처와 기능





# Email Archiving 아키텍처와 기능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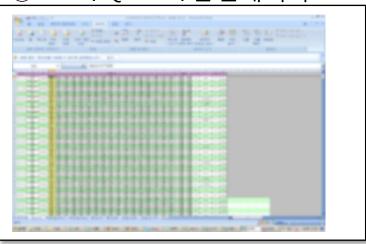
# 현실적인 Email Archiving 문제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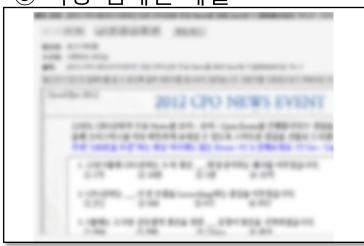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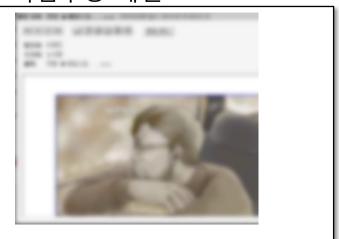
② Data/Q-Data/품질데이타



③ 각종 캠페인 메일



④ 비업무용 메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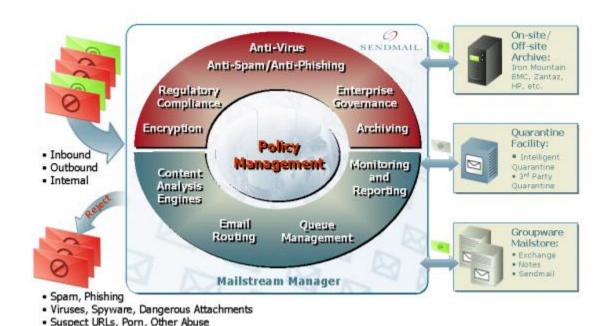
⑤ 송수신 주소, 회신주소, 제목 태그, 용어사용 등 규칙 부재

#### **Email Governance**



사내에서 사용하는 이메일을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. 보안, 컴플라이언스, 비용, 위험감소, 사용성 증가 등 고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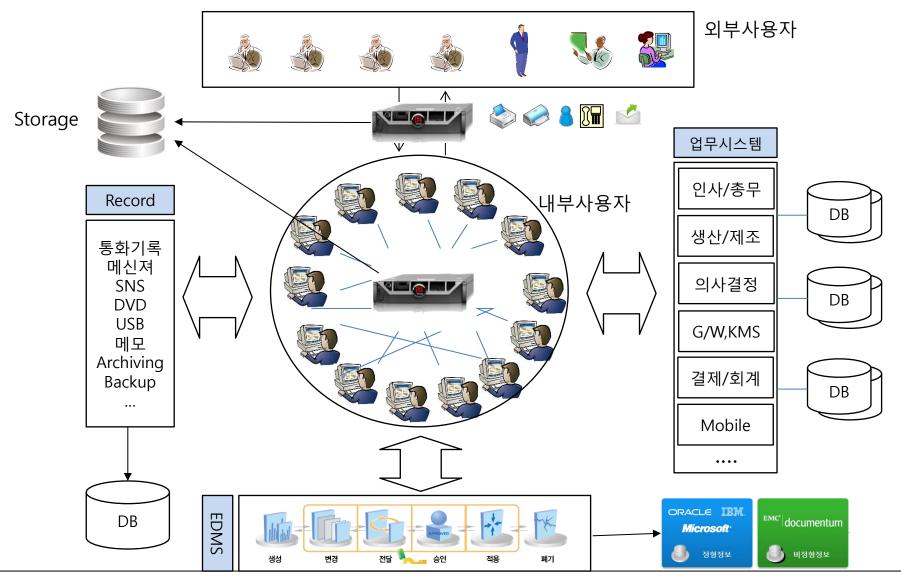
- 1. 외부 공격에 대한 대비
- 2. 내부자원절약
- 3. 컴플라이언스(Compliance) 준비
- 4. 보안강화
- 5. E-discovery에 대한 준비



# Email Archiving에서 E-discovery로 확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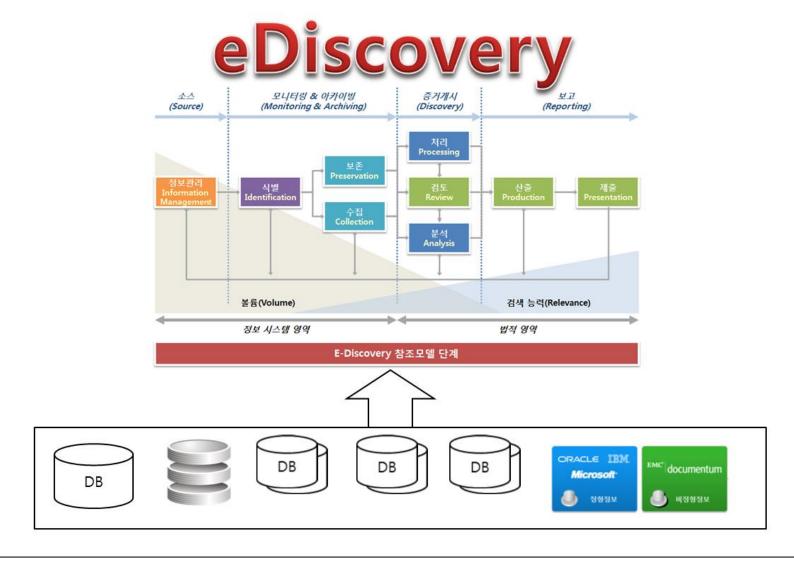
■ Email Archiving은 향후 E-discovery로 확대 발전할 수 있습니다.



# Email Archiving에서 E-discovery로 확장



■ Email Archiving은 향후 E-discovery로 확대 발전할 수 있습니다.



# 추가 고려사항



■ BYON(Bring Your Own Network) 허용여부

Social SNS 처리방법

# **Question and Answer**



